

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한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
번 호 11370

발의연월일 : 2018. 1. 15.

발의자 : 윤한홍 · 김승희 · 이명수

강석진 · 윤영일 · 김종석

문진국 · 함진규 · 홍철호

김규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임원 또는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일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, 해당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임원 또는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 및
파산선고에 해당하여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, 그 이후
에 행위능력 회복 및 복권 등으로 본래의 결격사유를 해소하여 바로
업을 이어갈 수 있음에도 일정기간(허가취소 후 3년) 허가를 받지 못
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
이 있음.

이에 임원 또는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
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

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기술신탁관리업 협약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(안 제35조의2제2항 제5호).

법률 제 호

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의2제2항제5호 중 “취소”를 “취소(제35조의2제2항 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협약에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5조의2(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) ① (생 략)</p> <p>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5. 제35조의7에 따라 허가가 <u>취소된</u>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</p> <p>③ ~ ⑧ (생 략)</p>	<p>제35조의2(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<u>취소(제35조의2제2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)</u>---</p> <p>-----</p> <p>③ ~ ⑧ (현행과 같음)</p>